



4단계 BK21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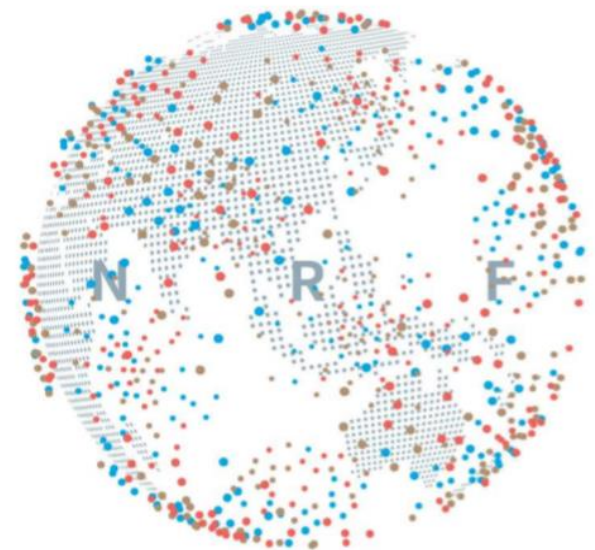


사업관리 운영 규정(교육연구단)

2021.1.

목 차

- 01 규정 체계
- 02 규정 주요 사항
- 03 FAQ



4단계 BK21 사업은 2021.1.1. 부터 **국가연구개발혁신법**을 준수하여야 함

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(2021.1.1.시행)

- ✓ 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**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**
- ✓ **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**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**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*까지, 제14조 및 제15조*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.
 - * 예고 및 공모 등, 과제선정, 협약, 과제수행 및 관리 / 평가, 과제 변경 및 중단
- ✓ **제13조(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)**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**연구개발비 사용 기준***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· 사용하여야 한다.

* (참고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: [별표2]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(제40조제4항), (제49조)
 : 대학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하는데 장학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.

4단계 BK21 사업은 「**학술진흥법**」과 「**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
이공계지원특별법**」을 법령상 근거로 추진

㉠ 학술진흥법

- 제7조(학문후속세대의 육성) 교육부장관은 대학생, 대학원생,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,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

- 제11조(학문후속세대의 육성)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(이하 “연구중심대학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교육부의 「**훈령**」에서 사업관리 운영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
 한국연구재단의 「**지침 및 집행기준**」에서 세부 훈령 상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함

㉔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훈령

- 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…(중략)…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7조(전문기관) ⑤전문기관의 장은 …(중략)… 훈령 및 지침의 범위에서 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* (참고) 4단계 BK21 사업 훈령은 2021년 1월 제정 예정인 「**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(이하 통합 훈령)**」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나, 사업 종료 시(27년)까지는 효력 유지(통합 훈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4단계 BK21 훈령은 제정 당시 추진 사업으로 분류)

㉔ 4단계 두뇌한국(BK21) 사업 관리 운영 지침,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

- 지침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…(중략)… 훈령의 위임을 받아 …(중략)… 사업 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-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…(중략)… 지침의 위임을 받아 …(중략)…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1 총칙 및 대학의 의무

4단계 BK21

- ☒ **(사업기간)** 2020.9.1.~2027.8.31.(7년)
 ※ (관련조항)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3조
- ☒ **(지원대상)** 교육연구단(미래인재양성사업, 혁신인재양성사업),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대학
 ※(관련조항)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2조
- ☒ **(연구윤리확립)** 관련규정 제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과목 개설 **의무**
 ※ (관련조항)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5조

(참고)3단계



- ☒ **(사업기간)** 2013.9.1.~2020.8.31.(7년)
 - (관련조항)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3조
- ☒ **(지원대상)** 사업단(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, 글로벌인재 양성형, 특화전문인재양성형)
 - (관련조항)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3조
- ☒ **(연구윤리확립)** 관련규정 제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과목 개설 **노력**
 - (관련조항)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5조



2 교육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(1)

4단계 BK21

- ✓ **(교육연구단의 장)**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, 사업참여 학사 조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

※ (관련조항)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8조

- ✓ **(참여 교수)** 신청 당시 참여 교수 수를 유지하여야 하며, 6개월 이내 충원이 어려운 경우 기한 연장 요청 필수 (대학 → 연구재단)

※ '20년 8월 퇴직으로 인한 충원 시 신규 임용 교수로 교체必

-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10조, 기본계획 Q&A 3쪽

(참고) BK21은 연구개발 수 제한 3책5공에 미포함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

교육연구단장 및 참여 교수 참여 기준



구분		교육연구단장		참여교수	
		단장 변경	단장 유지	참여가능	참여불가
국내외 기관 파견	1년 이내	가능	가능 (대리체제必)	○ (단장승인必)	-
	1년 초과	필수	불가	-	○
국내 연구년	1년 이내	가능	가능 (대학장승인必)	○ (단장승인必)	-
	1년 초과	필수	불가	○ (단장승인必)	-
국외 체류 (연구년, 연구활동, 장기출장)	6개월 이내	가능	가능 (연구년인경우 대학장승인必)	○ (연구년인경우 단장승인必)	-
	6개월~1년	가능	가능 (대리체제必)	○ (단장승인必)	-
	1년 초과	필수	불가	○ (단장승인必)	-
휴직/이직/퇴직/사망 참여제한		필수	불가	-	○

- ✓ **(참고) 3단계 BK21사업과 동일 기준 적용**

2 교육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(2)

4단계 BK21

✓ (참여대학원생)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함

1. 지원대학원생 : 연구장학금을 지원 받는 대학원생

- ① (미래 과학기술 분야 연구단 및 혁신 연구단) 전체 참여 대학원생 70%만 장학금 지원 가능(70% 기준일 : 매년 4월1일, 10월1일)
- ② (미래 인문사회 분야 연구단, 미래 연구팀 전체)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가능
- ③ (공통) 참여대학원생 간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지원대학원생 선정 관련 합리적 기준을 자체 규정에 명시하여야 함

2. 미지원대학원생 :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지 않는 단순 참여 대학원생으로 장학금 지원 외 모든 지원혜택(연수, 게재료 등)은 지원대학원생과 동일

※ (관련조항)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11조~제13조

(참고)3단계



✓ (참여대학원생)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함

1. 지원대학원생 : **좌동**

- ① (미래 과학기술 분야 사업단, 글로벌 사업단, 특화 과학기술분야 및 과학기술 기반 융복합 사업단) 전체 참여 대학원생 70%만 장학금 지원 가능(70% 기준일 : 매년 4월1일, 10월1일)
- ② (미래 인문사회 분야 사업단, 미래 연구팀 전체, 특화 인문사회 분야 사업단)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가능
- ③ (공통) 참여대학원생 간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지원대학원생 선정 관련 합리적 기준을 자체 규정에 명시하여야 함

2. 미지원대학원생 : **좌동**



2 교육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(3)

4단계 BK21

✓ **(신진연구인력)**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며, 교육연구단 연구에 전념하여야 함

1. 출신 비율 :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

- ① 1명 또는 2명 채용 시 준수 의무 없음(3인 이상 채용 시만 적용)
- ② 3분의 2 준수 기준일 : 매년 4월 1일, 10월 1일

2. 교외 강의 :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 가능

- ① 박사 후 과정생 : 학교 내외 포함 6학점 이내
- ② 계약교수 : 교외 강의 6학점 이내(교내 강의는 제한 없음)
- ※ 타교 교외 강의 시 4대 보험 가입 가능

3. 채용 기간 : **1년 이상** 2년 이내(최대 4년까지 가능)

※ 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

✓ **(산학협력전담인력)** 해당 대학의 채용 규정 및 기준 준용하여 산학협력 전문가 채용

※ 출신 비율, 교외 강의, 채용 기간 기준은 신진연구인력과 동일하며,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채용 가능

(참고) 3단계



✓ **(신진연구인력)**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등 준용하여 신진연구인력 채용

1. 출신 비율 : 좌동
2. 교외 강의 : 좌동
3. 채용 기간 : **2년 이내**(최대 4년까지 가능)

✓ **(산학협력전담인력)** 좌동

※ 단, 채용 기간은 2년 이내 최대 4년까지 가능



3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

4단계 BK21

- ✓ **(수시점검)** 필요 시 수시 점검 실시
 -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(신설)
- ✓ **(연차평가)** 대학원 혁신지원 대학 실시(신설)
- ✓ **(중간평가)** 미래인재 2023년 및 2026년, 혁신인재 2024년 실시
- ✓ **(종합평가)** 7년간 종합 성과평가를 위해 실시하며, 2026년 중간평가와 연계 가능
 - ※ (관련조항)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16조~제23조

연구성과 인정 기준



- ✓ **(논문)** 사사 표기는 의무가 아니며, 논문실적이 아래 소속 표기 기준 충족 시 실적 인정
 1.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: BK21 참여 학과 명 또는 교육 연구단(팀)명 기재 시 인정
 - ※ 단, 학과(부)미 표기 시 대학명(또는 단과대학명)까지 기재된 경우도 인정
 2. 참여 교수 : 소속 대학 명 기재 시 인정
 - ※ 동일 대학 내 타학과명으로 소속이 표기된 경우도 대학명 확인 가능하면 인정

★(참여 인력 전체) 타 기관 병기도 인정(예. ○○대학교 ○○과, ○○기술연구소)
- ✓ **(특허)** 기관 명의(학교, 산단, 산업체 등)의 특허 인정
 - ※ 단, 참여 교수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
★(참고) 논문, 특허 등 성과 인정 세부 기준은 향후 일부 변동 될 수 있음

4 교육연구단 지원 사업비 집행 및 관리(1)

4단계 BK21

✓ **(연구장학금)** 지원 기준을 충족하여 선발된 대학원생에게 자체 규정 기준에 따라 지급

1. 지원 단가: 석사 월70만원, 박사 월130만원, 박사수료 월 100만원 이상

※ 상한액 없음(2021.1.1.부터 적용): 세부내용 우측(→)

2. 지원 기간: 지원 대상으로 선발 시 한학기 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휴학/자퇴/취업 등 사유 발생 시 단(팀)장 승인을 받아 지원기간 조정 가능

3. 중복 지원: 타 사업 장학금과 중복 수혜는 인정 하나, 타 사업에서 중복 수혜를 제한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(예.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등)

★ (중요) 장학금 공동관리는 엄격하게 금지되며, 협약 해지 사유가 됨

연구장학금 상한선 관련 상세내용



✓ **(BK21 집행기준 제14조제4항)** 연구 장학금 지급 시 동 사업 훈령 제29조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

✓ **(BK21 훈령 제29조제8항)** 연구 장학금 지급 시 학술진흥법*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

*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: 석사급연구원 월 180만원 이내, 박사급연구원 월 250만원 이내

✓ **(BK21 훈령 부칙)** 제29조제8항에서 인용한 학술진흥법은 2021년1월1일자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으로 변경

✓ **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제40조제4항, 제49조)** 대학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하는데 장학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.

★ 즉, 2020.12.31.까지는 석사180만원, 박사250만원 상한선을 준수하여야 하며, 2021.1.1.부터는 상한선이 없으므로 자체 장학금 지급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

4 교육연구단 지원 사업비 집행 및 관리(2)

4단계 BK21

✓ (인건비)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월 보수로 지급

1. 신진연구인력 : 월 300만원 이상 지급(퇴직금, 4대 보험 중 개인부담금 포함한 금액)

※ 월 지급 기준액은 퇴직금 포함한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액은 276.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

2. 산학협력전담인력 : 인력의 전문성, 대학 자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채용하여 활용

※ 월 지급 기준액은 별도로 없으며, 파트 타임 가능

(참고)3단계



✓ (인건비)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월 보수로 지급

1. 신진연구인력 : 월 250만원 이상

※ 월 지급 기준액은 퇴직금 포함한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액은 230.8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

2. 산학협력전담인력 : 좌동



4 교육연구단 지원 사업비 집행 및 관리(3)

4단계 BK21

- ✓ **(교육과정개발비)** 교재개발비, 사례조사비 및 실험비 등으로 집행
 - ✓ **(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)** 논문 게재료,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소모성 재료비, 창업/취업지도/산업체와의 공동 활동 경비 등으로 집행
 - ✓ **(국제화 경비)**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장단기 해외연수, 해외 학자 초빙, 국제학술 대회 참가비, 해외 특허출원(등록) 비로 집행
- ※(3단계 대비 변경) 벤치마킹 대상 대학과의 워크숍 연1회 제한 폐지

국제(학술)대회 인정기준



- ✓ **(과학기술분야)** 4개국 이상 참여, 구두 발표 **20건** 이상, 구두 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% 이상(단, 국내 개최 시 1/3이상)
- ✓ **(인문사회분야)** 4개국 이상 참여, 구두 발표 **10건** 이상, 구두 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% 이상(단, 국내 개최 시 1/3이상)
- ✓ **(국제전시회)** 4개국 이상 참여, 출판작 10편 이상, 출판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% 이상(단, 국내 개최 시 1/3이상)

★ 단,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/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사업비 집행 불가

4 교육연구단 지원 사업비 집행 및 관리(4)

4단계 BK21

- ✓ **(교육연구단운영비)** 사업수행을 위한 목적의
교육연구단 운영비로 집행

1. 편성 기준: 사업비 총액 10%*이내 또는 5천만원**

이내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(큰 금액 적용 가능)

* 과학기술원의 경우 25% 이내

** 1차년도 및 8차년도는 2,500만원 이내

2. 용도 : 행정전담인력 인건비, 참여 교수 성과급,
국내 여비, 학술활동지원비, 회의 및 행사 개최 등

- ✓ **(간접비)** 대학(산단 포함) 교육연구단 총괄
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업비 총액의 5%이내

※ 과학기술원의 경우 2% 이내

(참고)3단계



- ✓ **(교육연구단운영비)** 좌동

1. 편성 기준 : 사업비 총액의 10%이내 또는 3천만원 이내

2. 용도 : 좌동

- ✓ **(간접비)** 대학(산단포함)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
경비로 사업비 총액의 5% 이내



🎯 자주하는 질문



집행기준
미준수

✓ 사업비 집행 기준이 제정되기 전 잘못 집행한 사항들은 어떻게 하나요?

- 4단계 BK21 기본계획 및 3단계 BK21 규정을 준수한 범위에서 허용 가능하나, 1차년도 사업 종료 전 조치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빠른 조치 요망 (예 :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월 250 지급 → 2020년도 사업비로 인건비 추가 지급)



코로나관련
집행

✓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운 유학생, 해외학자에게 사업비 집행 가능한가요?

- (장학금) 지급 가능하며, 해외에서도 교육과 연구에 전념 가능하다는 교육연구단(팀)장 확인서 구비 필요
- (해외학자) 전문가활용비로 지급 가능하며, 온라인 자문 실시 증빙 자료 구비 필요



장학금
상한선

✓ 연구 장학금 지급 시 상한선이 없어진 게 맞나요?

- (2020.9.1.~2020.12.31) 연구장학금 지급 시 석사 180만원, 박사 250만원 상한선 준수 필요
- (2021.1.1.~) 연구장학금 지급 상한선 없음(단, 대학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)



장학금
지급기간

✓ 1학기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,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요???

- 원칙적으로 1개 학기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하나, 휴학/자퇴/취업 등 사유 발생 시에는 단(팀)장 승인을 거쳐 지원 기간 조정 가능



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



감사합니다.

